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9 - 47
----------	---------

제출년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에서 예기치 않은 화재 발생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구조설비 설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아.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11조)
- 자.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차. 환수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3. 14. ~ 4. 3. (제출된 의견 없음)

2)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9.4.2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제3호 가목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나목·다목 및 제2호 나목·다목 중에서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

3.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2. 소방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마포구의회 의원 1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과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종류	주거형태	층수	설치위치	담당공무원 확 인 란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단독,다중)	<input type="checkbox"/> 3층 <input type="checkbox"/> 4층	<input type="checkbox"/> 베란다 <input type="checkbox"/> 복 도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5층			
	<input type="checkbox"/> 다가구주택	<input type="checkbox"/> 6층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7층 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아파트)	(층)			
설치지원내용 세부 설명					
설치시기	년 월 일				
<p>「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 청 인 (인)</p>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7조 (설치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중 지상 3층 이상이고 전용면적 85㎡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 사업예산: 연 1억원(약 600가구 설치예정)

※ 2019년도 하반기는 시범사업으로서 사업비 과소 책정(1/3수준)

○ 지원내용: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지지대, 표지판)

○ 선정방법: 마포구 피난구조설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추진방법: 연간단가계약

○ 설치비용(품셈적용)

- 벽부형

(단위: 원)

사용처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비합계	원가계산시
지상3층	SET	79,000	21,436	0	100,436	127,141
지상4층	SET	82,000	21,436	0	103,436	130,735
지상5층	SET	85,000	21,436	0	106,436	134,327

- 바닥형

사용처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비합계	원가계산시
지상3층	SET	119,000	21,436	0	140,436	175,049
지상4층	SET	122,000	21,436	0	143,436	178,644
지상5층	SET	125,000	21,436	0	146,436	182,237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2019 (하반기)	2020	2021	2022	2023	
세출	설치 지원비	37,000	97,000	97,000	97,000	97,000	425,000
	홍보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소계	4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40,000
□ 총 비용		4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4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2019 (하반기)	2020	2021	2022	2023	합계
구분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등	4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40,000
합계		4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40,000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재원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환경국 건축과 김성진
연락처	02-3153-9405